제9회 지방선거 전북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요 기초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 대상

시설 보호, 가족 부양을 넘어!
발달장애인도,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전북!

2026. 4. 2

전북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지방선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제9회 지방선거 전북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비전

시설 보호, 가족 부양을 넘어!
발달장애인도,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전북!

목표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역사회로 전환!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전북!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자립생활, 건강권 보장)
-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전북!

중점 과제

1 전북특별자치도	■ 차별 없는 이동·교육·노동·자립생활·건강권 실현 ■ 포괄적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도시 ■ 장애인 인권 존중 지역사회 조성
2 기초자치단체	■ 차별 없는 이동·교육·노동·자립생활·건강권 실현 ■ 포괄적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도시 ■ 장애인 인권 존중 지역사회 조성
3 도교육청	■ 소외없는 교육-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배경

UN장애인권리협약 및 각종 국내 장애인 인권법에 근거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권리에 관한 대중적 요구

주 제	정 책 요 구 안 (8개 과제 33개 정책)	페이지
Ⅰ 이동권	1. 특별교통수단 일일 16시간 운행을 위한 도비 지원 강화 2.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광역이동 24시간·즉시콜 기반 광역이동 전면 실시를 위한 시군 간담회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바우처) 24시간 광역 이동 지원 및 요금·교통약자서비스 기준 마련 4.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개선 지원 강화 5. 장애인의 집단 이동 지원 위한 장애인버스 2대 이상 도입 6.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7. 접근성 행정협의회 구성 8. 미래교통수단(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및 DRT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	8-38
Ⅱ 평생 교육 (도)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 제/개정을 위한 TF 구성 2)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신설 2.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 실현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운영에 따른 지원 3.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확대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현 - 전주시 장애인문해교육센터 설립	39-46

주 제	정 책 요 구 안 (8개 과제 33개 정책)	페이지
Ⅲ 노동권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300명 도입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60명 도입 (5명당 1명)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연속적 일자리 보장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안정적 일자리 보장	47- 52
Ⅳ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2.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및 옹호 장치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53- 64
Ⅴ 탈시설	1.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2. 장애인 주택 확보 및 주거생활서비스 제도화 3. 탈시설 및 자립생활 장애인 지원 강화 4. 시설입소장애인·입소대기장애인 지역사회 연계사업 시행 5.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학대피해생존자 자립 지원 체계 마련 6.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지원 사업 실시 7.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65- 72
Ⅵ 장애인 가족지원	1.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2.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73- 76
Ⅶ 건강권	1. 지역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5개년 수립 2. 중진료권당 장애친화병원 설치 3. 지자체 전 의료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 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77- 89

주 제	정 책 요 구 안 (8개 과제 33개 정책)	페이지
Ⅷ 장애인 인권존중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조례 제정	90- 91

주 제	정 책 요 구 안	페이지
평생교육 (시군구)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1)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 제/개정을 위한 TF 구성 2)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신설 -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신설 -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신설 2.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 실현	92- 99
평생교육 (교육청)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 제/개정을 위한 TF 구성 2)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신설 2. 「장애인평생교육법」 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 실현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운영에 따른 지원 3.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확대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실현 - 전주시 장애인문해교육센터 설립	101- 108

후보자별 요구안 정리

구 분	주 제	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예정자	- 8개 과제 33개 정책	8-91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대상	-전라북도 매칭사업 공통 -추가 92-99페이지	92-9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후보자 대상	-장애인 평생교육	101- 108
	(부록) 후보자 정책협약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자

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특별교통수단 분야]

1 특별교통수단 일일 16시간 운행을 위한 도비 지원 강화

□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최소 3000만원 이상 도비 지원 및 운전원 인건비 항목으로 명시

□ 법정 휴무일 및 광역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차량 한 대당 일일 16시간 운행 및 운전원 2.5인 배치 필요

□ 운전원 2.5명 중 2명은 지방정부/ 0,5명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예산 마련 시급

2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광역이동 24시간·즉시콜 기반 광역이동 전면 실시를 위한 시군 간담회

□ 광역이동지원센터 중심 이용자 등록· 배차 신청·배정 위한 지자체 업무 이관

□ 광역이동 대수 제한 폐지 및 지자체 내 전(全) 차량 광역 운행 허용을 위한 시군 간담회 실시

□ 광역 운행 예약제 폐지 및 즉시콜 기본 도입(일부 필요시 예약제 병행)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분야]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바우처) 24시간 광역 이동 지원 및 요금·교통약자서비스 기준 마련

□ 관내 모든 상업용 택시(개인·법인)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기능 의무화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외 차량(임차,바우처택시)에 대한 운영규정 신설 및 도비 지원 강화

□ 보행 가능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이용자 기준 수정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상업용 택시와 동일 운행범위 및 시간 적용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바우처택시)에 Door to Door, 10분 대기 등 장애특성 고려한 교통약자 승하차 서비스 도입

[버스 분야]

4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개선 지원 강화

□ 조례 개정 통한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 저상버스 운행 미적합한 도 관할 지방도로 전수 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

5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 포함

□ 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참여

6 장애인의 집단 이동 지원 위한 장애인버스 2대 이상 도입

□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2대 이상 구입 및 지자체 차원에서 운행 및 관리

[보도 및 접근 분야]

7 접근성 행정협의회 구성

□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행정협의회 사무국 신설 및 운영 지원

8 미래교통수단(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및 DRT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

□ 전북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DRT에 휠체어탑승설비 의무화

□ DRT(수요응답차량)에 대한 대한 휠체어 접근보장 및 의무화

□ 교통 관련 신기술 관련 사업 승인 시 교통약자 이동권 전제 조항 추가

□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실시

Ⅱ.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는 민주주의!

<장애인 평생교육>

1 [전북특별자치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 마련 및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 2026년 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 마련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이행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 확대

2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 전 자치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3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및 전면개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 제·개정

4 초등 · 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시행 및 예산 지원

□ 202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본교육과정 공고

□ 지침에 따라 초등·중등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실현

Ⅲ.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300명 및 전담인력 60명 도입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주20시간 300명 도입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60명 보장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의 연속적 · 안정적 일자리 보장 및 전문성 강화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및 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3년 공모제 폐지 및 평가지표제 도입, 연속 사업 시행

□ 기관 및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생활임금 도입

Ⅳ.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민주주의!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실현>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24 시간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및 지원 시간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 및 기준 하향과 지원 시간 확대

2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및 옹호 장치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종합조사 절차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 당사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신규, 변경, 갱신 등), 시·군·구 차원에서의 절차 조력인 배석 안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 중개기관 등)

□ 수급자격심의원회 개선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통지 시 종합조사 항목별 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기본 계획 수립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당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

Ⅴ.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탈시설 권리 실현>

1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수립

- 전체 사회복지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기능보강 투자 금지
- 신규입소 금지 및 입소대기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 계획 수립 및 평가 전과정 탈시설당사자 참여

2 장애인 주택 확보 및 주거생활서비스 제도화

□ LH·지역주택도시공사·지자체 협의 통해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 장애인 시설입소 및 재시설화 예방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자체 매입, LH, 지역주택도시공사 물량 활용)

3 탈시설 및 자립생활 장애인 지원 강화

□ 탈시설 및 자립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대상 탈시설 및 자립 지원

□ 탈시설 및 자립장애인 기초지자체 사례관리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한 탈시설 및 자립장애인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체계 구축

□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4 시설입소장애인 · 입소대기장애인 지역사회 연계 사업 시행

□ 시설입소장애인, 입소대기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사회 연계 사업 실시

- 지자체 주도 하에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 1:1 매칭 실시
-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별 연 사업비 2,000만 원 편성

5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학대피해생존자 자립지원 체계 마련

□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학대피해생존자 자립지원 체계 구축

- 학대피해 발생 시 쉼터 외 단기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연계
- 주거, 활동지원, 일자리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6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전 · 월세 지원 사업 시행

□ 장애인 전·월세 지원사업 시행

-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설: 수도권 2억, 지방 1억*20가구
- 장애인 월세 지원사업 신설: 200명*월 20만 원*24개월

7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Ⅵ. 장애인가족이 안전한 도시

<장애인가족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 11개 시·군 '찾아가는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2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조례 제정 및 보험가입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조례 제정 및 보험가입

Ⅶ. 장애인도 시민으로 건강하게 함께 사는 민주주의!

<장애인건강권 보장>

1 지역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5개년 수립

□ 지역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5개년 수립

□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 실태와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표를 설정하며, 연도별 이행 로드맵 수립

□ 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 평가·점검 체계 구축

2 중진료권당 장애친화병원 설치

□ 중진료권 또는 장애인 중의료권 단위별 장애친화병원 최소 1개소 지정·육성

□ 장애친화병원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 책임 명문화 및 예산 확보

3 지자체 전 의료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

□ 지자체 관할 전 의료기관 대상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기존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확대

□ 편의시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접근성 평가 체계 도입

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특별교통수단 분야]

1 특별교통수단 일일 16시간 운행을 위한 도비 지원 강화

□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최소 3000만원 이상 도비 지원 및 운전원 인건비 항목으로 명시

□ 법정 휴무일 및 광역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차량 한 대당 일일 16시간 운행 및 운전원 2.5인 배치 필요

□ 운전원 2.5명 중 2명은 지방정부/ 0,5명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예산 마련 시급

2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광역이동 24시간·즉시콜 기반 광역이동 전면 실시를 위한 시군 간담회

□ 광역이동지원센터 중심 이용자 등록· 배차 신청·배정 위한 지자체 업무 이관

□ 광역이동 대수 제한 폐지 및 지자체 내 전(全) 차량 광역 운행 허용을 위한 시군 간담회 실시

□ 광역 운행 예약제 폐지 및 즉시콜 기본 도입(일부 필요시 예약제 병행)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분야]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바우처) 24시간 광역 이동 지원 및 요금·교통약자서비스 기준 마련

□ 관내 모든 상업용 택시(개인·법인)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기능 의무화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외 차량(임차,바우처택시)에 대한 운영규정 신설 및 도비 지원 강화

□ 보행 가능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이용자 기준 수정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상업용 택시와 동일 운행범위 및 시간 적용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바우처택시)에 Door to Door, 10분 대기 등 장애특성 고려한 교통약자 승하차 서비스 도입

[버스 분야]

4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개선 지원 강화

□ 조례 개정 통한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 저상버스 운행 미적합한 도 관할 지방도로 전수 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

5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 포함

□ 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참여

6 장애인의 집단 이동 지원 위한 장애인버스 2대 이상 도입

□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2대 이상 구입 및 지자체 차원에서 운행 및 관리

[보도 및 접근 분야]

7 접근성 행정협의회 구성

□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행정협의회 사무국 신설 및 운영 지원

8 미래교통수단(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및 DRT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

□ 전북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DRT에 휠체어탑승설비 의무화

□ DRT(수요응답차량)에 대한 대한 휠체어 접근보장 및 의무화

□ 교통 관련 신기술 관련 사업 승인 시 교통약자 이동권 전제 조항 추가

□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실시

<장애인 이동권 - 도>

[특별교통수단 분야]

1 특별교통수단 일일 16시간 운행을 위한 도비 지원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광역이동 및 24시 운영 의무화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고질적인 문제. 윤종오 의원실에서 수집한 전국 특별교통수단 운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의 최대 대기시간은 약 4시간. 또한 평균 대기시간이 24분인 데 비해 최대 대기시간은 4시간 58분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큼. 이는 배차를 신청할 때마다 대기시간이 크게 달라 탑승 시간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교육, 노동, 여가 등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 삶을 계획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 요소임.

- 이는 차량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차량 운전원이 부족하면 차량 운행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차량 운행 수도 함께 줄어듦. 지자체는 광역이동 및 24시 운영에 따라 대기시간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하지만, 인력 충원을 통해 수요에 대응한 공급을 갖춘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대기시간의 문제는 광역이동·24시 운영 의무화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민원이었음.

지역	운행대수	운전원 수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명)	평균 대기시간	시간대별 최대 대기시간
서울특별시	818	835	1.02	0:32:00	4:58:00
광주광역시	128	152	1.19	0:32:29	0:53:19
대구광역시	218	218	1.00	0:27:28	2:07:00
대전광역시	116	136	1.17	0:37:36	1:18:18
세종특별자치시	33	29	0.88	0:19:48	미제출
울산광역시	95	104	1.09	0:25:00	1:56:00
인천광역시	276	277	1.00	0:25:24	2:30:00
부산광역시	222	222	1.00	0:21:00	0:21:00
제주특별자치도	69	69	1.00	0:26:03	3:53:05
강원도	254	315	1.24	0:22:47	4:30:15
경상북도	266	274	1.12	0:26:30	12:09:05
전라남도	236	303	1.28	0:29:16	9:45:40

전라북도	267	289	1.08	0:24:23	4:58:17
경상남도	432	513	1.19	0:42:55	6:39:00
충청남도	233	258	1.11	0:22:00	5:00:00
충청북도	201	218	1.08	자료 미비	자료 미비
경기도	1233	1464	1.19	0:16:08	3:07:00

* 2025년 9월 기준. 윤종오 의원실 제공 자료. 운전원은 8시간 근무자만 산입.
* 충청북도의 경우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정확한 시간을 알기 어려움.

- 따라서 도비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운전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관련 지출 항목을 인건비로 제한할 필요 있음.

○ 일일 16시간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수 차량 한 대당 약 2.5명

-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콜택시의 압도적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운행률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음. 휴일과 주말, 연차를 감안하여 일일 16시간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수는 차량 한 대당 약 2.5명.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차량 한 대당 운전원 수는 1.08명으로, 차량 한 대당 평균 6시간 30분밖에 운행되지 못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고지에 방치됨. 이는 대당 5000만 원을 호가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자원의 낭비이며 예측할 수 없이 긴 대기시간의 주된 원인임.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차량 한 대당 운전원 2.5명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필요.

<2025년 전북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시군구	법정 대수	운행 대수	운전원 수	한 대당 운전원수	일일 운행시간	일일 운행률	최대 대기시간	평균 대기시간
전북도	273	267	289	1.08	6.49	27.06%	임실군	완주군
전주시	60	63	69	1.10	6.57	27.38%	04:03:42	00:38:36
군산시	31	33	33	1.00	6.00	25.00%	04:32:21	00:23:06
익산시	39	41	43	1.05	6.29	26.22%	04:29:18	00:22:58
정읍시	18	18	22	1.22	7.33	30.56%	04:25:36	00:23:33
남원시	19	19	21	1.11	6.63	27.63%	04:56:15	00:20:36
김제시	24	24	25	1.04	6.25	26.04%	04:28:34	00:21:20
완주군	21	15	14	0.93	5.60	23.33%	04:15:36	00:38:56
진안군	7	4	6	1.50	9.00	37.50%	03:44:57	00:28:27
무주군	6	6	6	1.00	6.00	25.00%	04:24:16	00:36:43
장수군	5	5	6	1.20	7.20	30.00%	03:34:42	00:19:16
임실군	8	7	8	1.14	6.86	28.57%	04:58:17	00:15:28
순창군	7	6	7	1.17	7.00	29.17%	03:34:55	00:21:26

고창군	14	14	15	1.07	6.43	26.79%	03:24:05	00:25:13
부안군	14	12	14	1.17	7.00	29.17%	04:34:55	00:18:34

2.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8조

3. 요구안

□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최소 3000만원 이상 도비 지원 및 운전원 인건비 항목으로 명시

□ 법정 휴무일 및 광역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차량 한 대당 일일 16시간 운행 및 운전원 2.5인 배치 필요

□ 운전원 2.5명 중 2명은 지방정부/ 0,5명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예산 마련 시급.

2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즉시콜 기반 광역이동 전면 실시를 위한 시군 간담회

1. 현황 및 필요성

○ 광역이동전용차량 및 예약제 방식의 운행에 따른 광역이동 제한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의 광역이동이 의무화됨. 그러나 일일 관외 이동 가능 차량 수를 제한하고 전면 예약제 시스템으로 운영함에 따라 광역 이동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음. 전면 예약제 및 광역이동 대수 제한으로 인해 당일 관외로 나갈 일이 생기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 교통약자법 개정 취지에 위배됨.

지역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명)	광역운행 24시간 미실시, 예약운행 여부	광역운행 24시간 미실시, 예약운행 사유	광역운행 대수제한 여부
서울	1.02	**미실시 (탑승일 전일 07~22시 예약)**	특별교통수단의 지자체별 운영에 따른 제약여건 등	o
광주	1.19	**미실시 (전날 10~15시 예약)**	관내 배차 지연, 운전원 퇴근시간 보장 등	o
대구	1.00	실시 (전일 예약)	x	o
대전	1.17	△ (세종,충남공주,계룡,논산,금산,충북청주,옥천은24시간운행) 그외지역은예약운행(운행일2일전까지예약)	관내 운행수요 충족을 위한 제한	o
세종	0.88	**미실시 (최소 3일전 예약)**	미기재	o
울산	1.09	**미실시 (전일 11~17시 예약)**	1.야간운행차량 2대이며 광역을 나가면 관내 이용고객 이동지원이 어려움 2.야간장거리운행은 운전원의 피로도 상승으로 안전운행에 저해됨 3.예약으로 운행하는 이유: 외부로 나가는 차량의 운행시간대 사전파악으로 관내예약 및 운행에 대비	o

인천	1.00	**미실시 (전일 예약)**	한정된 차량 및 인력	o
부산	1.00	실시 (콜센터 전일예약 9:00-17:00)	x	x
제주	1.00	**실시 (휠체어 2대 이상 동시탑승하는 다인승 운행 시 예약제 운행)**	x	x
강원	1.24	고성군 미실시(예약제), 그 외 지역 실시(예약제)	고성 24시간 미이행 사유: 운행대수 부족에 따른 24시 미이행	o
경북	1.12	**포항(병원 목적의 예약만 운행),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칠곡, 울진**	포항: 인력 및 관내 수요 해결 선과제 문경,고령,칠곡:예산부족 의성:예산부족으로인건비지원어려움,운전원피로도존재 울진:운전원근로시간및인력확보 문제	△(경주 무응답, 안동,영주, 영천, 문경,청송,양양, 울진)
전남	1.28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곡성, 보성: 심야이용 수요 부족 및 예산 부족 구례,고흥,영암,장성,완도,신안: 심야이용수요부족 함평:운전자부족 영광,진도:수요없음	o(순천,여수,광양, 보성,완주 무응답)
전북	1.08	실시 (예약 및 즉시콜 가능)	x 광역운행 되지만 즉시콜 기반이 아님. 전체 운행대수에 20%만 관외로 나갈수 있음. 이걸 예약제로 운행하고 있음. 예착이 다 차면 즉시콜이 안됨. 대수제한을 폐지하고 즉시콜을 열어달라는 이야기	o
경남	1.19	실시 (즉시콜, 예약콜 가능)	x	x
충남	1.11	실시 (7일전 예약)	x	o
충북	1.08	**제천, 괴산, 음성, 단양: 실시(예약제) 청주,충주,진천보은,옥천,영동,증평:미실시(예약제)**		△(청주, 보은, 영동, 괴산, 음성, 단양

				제외 전 지역)
경기	1.19	x	x	△(가평, 여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오산, 양주, 하남, 남양주 제외 전 지역)

* 1대당 운전원 수는 8시간 전일제 운전원만 산입.

- 지자체는 광역 이동 수요 증가 시 관내 이동 대기시간 증가를 사유로 광역 이동 지원 차량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정 운행 중이나 광역 이동 수요가 증가하여 관내 대기시간이 늘어난다면 특정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 대수를 포함해 전체 운행률 증가가 필요.

2.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6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3. 요구안

□ 광역이동지원센터 중심 이용자 등록· 배차 신청·배정 위한 지자체 업무 이관
□ 광역이동 대수 제한 폐지 및 지자체 내 전(全) 차량 광역 운행 허용을 위한 시군 간담회 실시
□ 광역 운행 예약제 폐지 및 즉시콜 기본 도입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분야]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 · 바우처) 24시간 광역 이동 지원 및 요금 · 교통약자서비스 기준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 심장장애인 등 보행가능 교통약자 이동권 제약

-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보완수단으로,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이용자 기준으로 둠.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며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이 있음.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이들을 위한 보완 교통수단으로, 주로 지자체가 상업용 택시와 계약을 맺어 차량, 운전원을 대여하여 전용차량으로 운영하는 방식(임차택시)과 이용자가 상업용 택시 이용 시 비용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바우처택시)가 있음.

-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 장착이 필요한 특별교통수단과 달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별도의 장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상업용 택시가 물리적으로 기능 수행이 가능.

○ 평등한 운행방식 및 교통약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배치 필요

-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보완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역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완수단임에도,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4시간 운행 및 광역 운행을 하지 않고 있음. 상업용 택시는 당초 탑승시간이나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교통수단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시 · 광역운행이 의무화되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자만 사각지대에 놓임.

지역	인구대비 상용 택시 수 (인구 1천명 당 택시 수)	임차·바우처 도입여부	24시간 운행 여부	인근 지역 운행 여부
서울특별시	7.68	O	O	서울 및 인접 12개시

광주광역시	5.8	O	X	나주,담양, 장성,함평, 화순
대구광역시	6.66	O	-	-
대전광역시	5.99	O	O	X
세종특별자치시	1.29	X	-	-
울산광역시	5.19	O	O	X
인천광역시	-	O	X	O
부산광역시	7.04	O	O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대학 병원 편도만
제주특별자치도	7.98	O	O	O
강원	4.84	O	원주, 강릉 X	X
경남	3.72	O	X	X
전남	3.48	O	X	X
전북	4.65	전주	X	X
충남	2.75	△	X	X
충북	4.14	청주, 충주	△	X

-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분 대기, Door to Door 서비스 등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주로 지자체가 상업용 택시와 계약을 맺어 차량, 운전원을 대여하여 전용차량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임차택시에도 10분 대기, Door to Door 서비스 등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바우처택시 탑승자들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에 미비한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적극 도입의 필요성 및 발달장애인 이용대상 확대

- 발달, 지적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며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복잡하고, 정보접근 지원체계가 부족한 비장애중심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움.
- 특별교통수단외 차량은 이들을 위한 보완 교통수단으로, 주로 지자체가 상업용 택시와 계약을 맺어 이용자가 상업용 택시 이용시 비용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 의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음.
- 전북은 2024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그 위상에 맞지 않게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임.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강원은 바우처택시 2900여대가 도입됐고, 등록이용자수만 6100여명이다. 또한 발달장애인도 이용 가능하

게 열어둠.

전북과 인근해 있는 전남은 600여대가 도입됐고, 등록이동자수가 3만여명임. 이에 비해 전북은 바우처택시 50대가 도입됐고, 등록이용자수가 1300명에 불과하다. (아래표 참조)

- 또한, 2025년 9월 대구에서는「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 주간활동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킴.

■ 지역별 바우처택시 운영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역지자체	시·군·구	택시현황			강원 바우처 택시현황				
		전체 인구	상업용 인가 택시 수	택시1대당 인구 수	도입 여부	도입 대수	등록 이용자 수	지난 24개월간 월평균이용 횟수	발달장애인 탑승 가능여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85,182	1,662	172	O	1,679	2,000	7,628	-
	원주시	362,775	1,868	194	O	25	907	8,083	조건부(보행상 장애 Y)
	강릉시	206,881	1,169	177	O	819	1,974	7,554	-
	동해시	86,854	482	180	X	-	-	-	-
	태백시	37,436	276	136	O	276	797	2,686	O
	속초시	80,049	583	137	O	-	-	-	-
	삼척시	60,964	256	238	X	-	-	-	-
	홍천군	66,328	148	448	X	-	-	-	-
	횡성군	45,823	84	546	X	-	-	-	-
	영월군	36,334	98	371	O	97	444	1,083	O
	평창군	39,913	102	391	X	-	-	-	-
	정선군	33,279	190	175	X	-	-	-	-
	철원군	40,006	103	388	X	-	-	-	-
	화천군	22,922	54	424	X	-	-	-	-
	양구군	20,479	40	512	X	-	-	-	-
	인제군	30,910	44	703	X	-	-	-	-
	고성군	26,751	76	352	X	-	-	-	-

	양양군	27,318	79	346	X	-	-	-	-
합계						2,896	6,122	27,034	

광역지자체	시·군·구	택시현황			전북 바우처 택시현황				
		전체 인구	상업용 인가 택시 수	택시1대당 인구 수	도입 여부	도입 대수	등록 이용자 수	지난 24개월간 월평균이용 횟수	발달장애인 탑승 가능여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639,619	3,619	177	여	50	1,303	4.7	여 (중증장애및 보행상장애 있을경우)
	군산시	256,575	1,240	207	부	-	-	-	-
	익산시	267,548	1,413	189	부				
	정읍시	101,000	513	197	부				
	남원시	74,867	321	235	부				
	김제시	81,586	327	249	부				
	완주군	100,331	147	682	부				
	진안군	24,205	40	605	부				
	무주군	22,904	58	394	부				
	장수군	20,444	32	638	부				
	임실군	25,291	51	495.90	부	-	-	-	-
	순창군	26,741	48	557.10	부	-	-	-	-
	고창군	50,563	127	398	부				
	부안군	47,446	143	332	부				

광역지자체	시·군·구	택시현황			전남 바우처 택시현황				
		전체 인구	상업용 인가 택시 수	택시1대당 인구 수	도입 여부	도입 대수	등록 이용자 수	지난 24개월간 월평균이용 횟수	발달장애인 탑승 가능여부
전남	목포	218,347	1,456	150	0	20	3,229	5	X
	여수	264,724	1,427	186	0	60	3,739	6.6	X
	순천	278,322	1,118	249	0	40	3,531	8.8	X
	나주	116,891	229	510	0	20	1,857	8.1	X
	광양	155,317	400	388	0	35	1,976	11.2	X
	담양	45,455	89	511	0	25	574	8.8	X
	곡성	27,060	49	552	0	43	766	6.5	X
	구례	24,419	83	294	0	14	342	9.4	X
	고흥	59,712	145	412	0	31	1,435	6.2	X
	보성	36,720	68	540	0	25	1,060	8.2	X
	화순	60,370	136	444	0	15	1,211	10.6	X

	장흥	34,212	65	526	0	12	1,206	7.2	X
	강진	32,722	82	399	0	34	961	7.5	X
	해남	63,120	179	353	0	45	1,499	9.1	X
	영암	50,329	84	599	0	30	900	8.9	X
	무안	95,567	137	698	0	40	1,615	6.6	X
	함평	29,541	64	462	0	15	725	9.3	X
	영광	53,191	114	467	0	40	911	8.5	X
	장성	42,026	85	494	0	4	624	6.8	X
	완도	44,798	120	373	0	20	665	9.4	X
	진도	28,979	72	402	0	64	933	7.7	X
	신안	38,037	58	656	0	3	304	5.4	X
합계						635	30,063		

- 특히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분 대기, Door to Door 서비스 등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주로 지자체가 상업용 택시와 계약을 맺어 차량, 운전원을 대여하여 전용차량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임차택시에도 10분 대기, Door to Door 서비스 등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바우처택시 탑승자들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

2.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10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3. 요구안

□ 관내 모든 상업용 택시(개인・법인)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기능 의무화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외 차량(임차,바우처택시)에 대한 운영규정 신설 및 도비 지원 강화
□ 보행 가능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 이용자 기준 수정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상업용 택시와 동일 운행범위 및 시간 적용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바우처택시)에 Door to Door, 10분 대기 등 장애특성 고려한 교통약자 승하차 서비스 도입

4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개선 지원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않는 저상버스

- 2023년 1월 10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의 교체 및 도입이 의무화 됨. 그러나 저상버스 도입을 유예할 수 있는 좌석형 버스와 예외노선을 제외하더라도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 40%대. 별도 패널티가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저상버스 예외노선 자료 제공 천준호 의원실
저상버스 보급률 자료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지역	저상버스 예외노선 비율	총 대수	저상버스 대수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합계	**11.61%**	**42761**	**17201**	**40.23%**
서울특별시	22.80%	8588	5487	63.89%
인천광역시	10%	2204	631	28.63%
광주광역시	0%	1131	436	38.55%
대구광역시	0%	1653	795	48.09%
대전광역시	0%	1088	468	43.01%
세종특별자치시	0%	417	243	58.27%
울산광역시	16.85%	906	160	17.66%
부산광역시	1.76%	3094	1136	36.72%
제주특별자치도	10.8%	868	188	21.66%
강원도	11.98%	850	249	29.29%
경기도	6.7%	13826	4907	35.49%
경상남도	2.8%	2116	895	42.30%
경상북도	5.88%	1565	387	24.73%
전라남도	34.6%	1276	244	19.12%
전북특별자치도	31.68%	1062	339	31.92%
충청남도	15.79%	1230	309	25.12%
충청북도	41.5%	887	327	36.87%

○ 한편 법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제외되는 예외노선은 전국 평균 10% 이상에 해당함. 전북특별자치도는 31.6%로 전국평균의 3배 이상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정 내 개선 및 대안을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예산편성 및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예외노선을 해소,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 관할 지방도로의 도로 환경으로 인한 저상버스 예외노선 지정

- 저상버스 예외노선 지정 시, 도 관할의 지방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어렵다고 응답하는 기초지자체도 있는 만큼 도 단위에서 이에 대한 해소가 시급.

<전국 대비 전북지역 저상버스 예외노선 현황표>

지역	구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합계
전국	저상버스 노선수	6350	3160	1806	11316
	저상버스 예외노선수	331	638	345	1314
	저상버스 예외노선 비율	5.2%	20.2%	19.1%	11.6%
전북	저상버스 노선수	507	482	40	1029
	저상버스 예외노선수	20	306	0	326
	저상버스 예외노선 비율	3.9%	63.5%	0	31.68%

2.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3. 요구안

□ 조례 개정 통한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 저상버스 운행 미적합한 도 관할 지방도로 전수 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

5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1. 현황 및 필요성

○ **저상버스가 보급되어도 승하차 서비스가 미비해 탑승할 수 없는 현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명시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이 의무화됨. 이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시, 저상버스 등 물리적 환경 제공과 별개로 운전원 등 차별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률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
- 관련 교육이 법제화된 만큼, 해당 교육이 절차상의 교육으로 안착되지 않고 장애인이 이동 시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필요.
- 더불어 단순히 교통약자 서비스뿐 아니라 교통약자 인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배치되어 운수종사자들의 장애 등 교통약자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 도모 요청

2.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3. 요구안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인권교육 포함
□ 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참여

6 장애인의 집단 이동 지원 위한 장애인버스 2대 이상 도입

1. 현황 및 필요성

○ KTX 미설치 또는 동일 노선 외 지역 이동 불가한 장애인 장거리 이동 현실

- 시외(고속)버스 노선의 휠체어 접근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KTX역이 미설치된 지역이나, KTX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노선 내 있지 않으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은 불가.
-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장애인의 집단 이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를 보완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 장애인이 집단으로 여행 및 교육이 필요할 시 운전원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광역자지단체가 운영하는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는 특정 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또는 공기업에서 운전원까지 포괄하여 직접 관리하며 지역 내 장애인이 개인 차원의 집합 이동 혹은 단체 요청 시 대여.
- 현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장애인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경남(신규 도입), 전남(검토)

2.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3. 요구안

□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2대 이상 구입 및 지자체 차원에서 운행 및 관리

[보도 및 접근 분야]

7 접근성 행정협의회 구성

1. 현황 및 필요성

○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

- 현재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정책 교류를 위한 공식적인 구조는 부족한 상황임.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된 제도나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시행착오 역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접근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이 필수적임. 또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며, 지역 현장의 경험과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야 함.
- 이에 전국의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접근성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공동으로 분석·개선하며, 장애인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접근권 정책을 발전시키는 한편, 중앙정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연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요구안

□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행정협의회 사무국 신설 및 운영 지원

8 미래교통수단(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및 DRT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계획 수립

1. 현황 및 필요성

○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장벽이 되는 현실**

- 드론택시, 자율주행차량, DRT(수요응답형 교통)와 같은 미래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이 되지 않아 심각한 이동권 침해가 발생함.
- 특히, 드론택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개선이 거의 불가능함.
- 이를 위해 미래교통수단 도입 초기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벽지DRT, 복지택시 등을 운행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음.(하단 표 참조)**

2.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3. 요구안

□ 전북 13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는** DRT에 휠체어탑승설비 의무화

□ DRT(수요응답차량)에 대한 대한 휠체어 접근보장 및 의무화

□ 교통 관련 신기술 관련 사업 승인 시 교통약자 이동권 전제 조항 추가

□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실시

■ 전북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현황

시·도	시·군·구	운영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운행 지역·노선	운행 대수	운행 시간	최초 운영 개시 연월	현재 운영 여부	차량 모델명	최대 탑승 인원 수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여부
전북	전주시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	공공형 택시	공공형 택시 DRT	9개동 39개 시 외곽 농촌마을	30	07:00~17:20	2017. 4. 13.	운영중	아이오닉5, 소나타, 그렌저, K5, K7, 니로EV, 스포티지 아이오닉 7	4	X
전북	전주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바로온	마을버스	시 외곽 중심 29	29	06:00~23:00	21. 11. 14.	ㅇ	일레트릭카운티25, 쏠라티 4	30, 15	X
전북	군산시	군산, 우성여객	행복콜버스	벽지 DRT	군산시 6개 권역	11	07~22시	2018.09	O	현대 쏠라티	15	X
전북	익산시	익산여객	행복콜버스	DRT	함열읍, 여산면, 오산면	4	07:00~20:30	2019	O	쏠라티	15	X
전북	익산시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마을버스	DRT	함열읍 일대, 금마면 일대	8	07:00~20:30	2022	O	카운티	23	X
전북	정읍시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협의회	복지택시	복지택시	16개 읍면동	31	08:00~17:30	2014.11.3	O	소나타 등	4	X
전북	남원시	㈜남원여객	행복콜버스	DRT	대강	1	07:00-18:00	19. 1	O	카운티8	15	X
전북	남원시	남원시	행복콜택시	DRT	12개 읍면동	15	08:00-18:00	19. 4	O	소나타 등	5인	X
전북	김제시	김제시	행복콜택시	drt(택시형)	김제시 관내	42	08:00~17:00	2018	O	일반 승용택시	5인	X

					198개 마을							
전북	완주군	완주운수안전협동조합	행복콜버스	벽지 DRT	완주군 5개면	9대	07:00~20:00	2015	O	스타리아,쏠라티	11~15	X
전북	완주군	완주개인택시조합,(유)상신교통	행복콜택시(으뜸택시)	벽지 DRT	완주군 8개 읍면, 39개 마을	11대	07:00~20:00	2014.11.20.	O	중형 택시	4	X
전북	진안군	무진장여객	행복콜버스	DRT	10개 면	13대	07:00~20:00	2016	O	카니발	12인	X
전북	진안군	진안개인택시	행복콜택시	DRT	10개 면	8대	07:00~18:00	2018	O	중형 택시	5인	X
전북	무주군	무진장여객	행복콜버스	벽지 DRT	무주군	9대	07:00~20:00	2015	O	스타리아,쏠라티,카운티	15~21인승	X
전북	무주군	무주군 택시	행복콜택시	벽지 DRT	무주군	44대	07:00~19:00	2018	O	중형 택시	4인승	X
전북	장수군	무진장여객	행복콜버스	벽지 DRT	장수군	7대	07:00~18:00	2016	O	스타렉스,스타리아	11~12인승	X
전북	장수군	장수군 택시	행복콜택시	벽지 DRT	장수군	30대	07:00~18:00	2015	O	일반승용택시	5인승	X
전북	임실군	㈜임순여객	행복콜버스	벽지DRT	운암, 강진, 덕치, 관촌면	4	07:00-18:00	16. 1	O	쏠라티 3, 카운티 1	15	X
전북	임실군	임실관내 개인, 법인택시	행복콜택시	벽지DRT	11개읍면, 47개마을	36	07:00-18:00	17. 1	O	중형택시	4	X
전북	순창군	㈜임순여객	행복콜버스	drt(버스형)	3개면 61개 마을	3	07:00-18:00	2020. 12	O	쏠라티 3	15	X
전북	순창군	순창군	행복콜택시,	drt(택시형)	11개 읍면 123개	47	07:00-21:00	2015. 7.	O	일반 승용택시	5	X

			마을택시		마을							
전북	고창군	고창군	행복콜택시	drt(택시형)	13개읍면 183개마을	42대	00:00~24:00	2018	O	일반 승용택시	4	X
전북	고창군	고창군	행복버스	마을버스 대체 drt	4개읍면 26개마을2대	2대	07:00~19:00	2019.8	O	쏠라티	15	X
전북	부안군	부안군	행복택시	drt(택시형)	부안군 관내 57개 마을	57대	주 3일	2015. 2.	O	일반 승용택시	5인	X
전북	부안군	부안군	행복콜버스	drt(버스형)	위도면	1대	주 7일	2020. 7	O	카니발(11인승)	11인	X

Ⅱ. 장애인도 시민으로 교육받는 민주주의!

<장애인 평생교육 - 도>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 지난 25.10.26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4년 6개월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본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각종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와 체계 등을 명시한 법안임.

◦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기존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은 담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을 법안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수십년간 박탈되어왔던 성인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지자체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지자체의 심의·전달체계는 모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과 정책들은 기존 시·도 및 시·군·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또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음.

◦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제 5조),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제 22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제 18조, 제19조), 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제 23조)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을 교육청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의 평생교육

을 권리답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개정 되어야 함.

2. 요구안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주요안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명시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항 명시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명시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TF 구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북지부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신설

2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평생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명시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 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제31조 ⑤에 따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해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이후 장애인평생교육 제도화에 따른 지원 강화의 필요

◦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법안에 따라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단순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리 보장과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의 의무를 갖게 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5조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학습지원인력, 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22조는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고, 해당 지자체 장 등이 계획 수립을 의뢰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해당 학습자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하는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19조 5항은 국가·지자체·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에서 정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은 21

년에 발표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음.

2. 관련 근거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5조, 제 19조, 제 22조

□ 21.6.30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3. 요구안

□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예산 지원 기준 마련**

- 교육부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
- 이에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준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기준 마련 필요

○ **장애인평생교육 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급식·간식비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
- 급식 지원이 필요한 장시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기준 혹은 시·도교육청 해당연도의 급·간식비 지원 기준 등을 준용하되, 성인장애인학습자를 감안하여 지원

○ **중증장애성인 4명당 1명의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
- 발달(지적,자폐성), 심한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는 4명당 교육인력 1명 지원

■ 종사자 배치 기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table>
<tr><th>직 급</th><th colspan="2">역 할</th><th>인 원</th></tr>
<tr><td>시설의 장</td><td colspan="2">-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업무 총괄 관리</td><td>- 학습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td></tr>
<tr><td rowspan="3">교육·행정 인력</td><td>교육인력
(비상근포함)</td><td>-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 및 운영
※ 상근 교사는 일 4시간 이상 프로그램 담당 및 운영을 해야 함</td><td>- 학습자 10명 당 1명
(상근·비상근 포함 기준)
- 발달(지적,자폐성), 심한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는 4명당 1명
(± 40% 가감 가능)</td></tr>
<tr><td colspan="3">※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 심한 뇌병변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인원은 4명을 권장하되 이를 초과 할 경우, 1명의 보조인력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인력을 상근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담당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시간 동안에는 담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상담, 돌봄, 수업 준비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교육인력 인원 산출 시 소수점 발생 시 절하
예시1) 학습자 45명일 경우 : 4명
예시2)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심한 뇌병변, 심한 장애 두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7명
예시3) (+40%일 경우) 예시2와 동일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학습자 5.6명당 1명으로 총 5명
예시4) (-40%일 경우) 예시2와 동일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학습자 2.4명당 1명으로 총 12명</td></tr>
<tr><td>행정인력</td><td>-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업무
* 예·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이용자 등록 관리, 보조인력 관리 등</td><td>- 학습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td></tr>
<tr><td colspan="4">※ 학습자 산출 기준 시간(시설의 장, 행정인력 해당): 주당 학습자 수* X 주당 20시간
* 개별 프로그램 학습자 총수가 아님(인원 중복 산정 불허)
(예시) 학습자 30명일 경우, 학습자 산출기준은 30명 X 주 20시간= 주당 600시간
- 주당 600시간은 시설의 장, 행정인력 배치를 위한 학습자 산출 기준 시간으로, 학습자 30명이 주당 20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습자 10명은 주당 30시간, 학습자 20명은 주당 15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 600시간을 충족하게 되면, 시설의 장과 행정인력을 각각 1명씩 배치 가능함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의무 배치
※ 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경우 겸무 권고(교육인력 또는 행정인력)</td></tr>
</table>

○ 장애성인 학습자에게 안정적인 교육제공을 위하여 150평 이상의 교육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따른 교육공간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대상자의 특성상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 필요하며, 장애성인학생 30명 학생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교육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 150평 이상의 교육공간 마련 및 지원 필요

3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의 기초학력 미달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으로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전체 국민(25세~64세) 중 중졸이하 학력은 12%로 장애인은 전체국민에 비하여 4.5배 이상 높아 기초학력 미달이 매우 심각함.

장애인의 교육정도(2023 장애인실태조사)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무학	12.3	12	10.9	9.2	8.5
초등학교	33	29.4	27.5	28.4	26.8
중학교	18.4	16	16.8	18.1	16.3
고등학교	24.5	27.2	29.6	29.9	31
대학 이상	11.8	15.3	15.2	14.4	17.4
계	100	100	100	100	100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등록된 성인장애인의 최종학력 현황

구분	전체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모름/무응답
장애인평생교육시설	7,991	5,615	258	204	1,652	257	6	-
	100%	70.3%	3.2%	2.5%	20.7%	3.2%	0.1%	-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 장애인이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고, 참여프로그램수가 전체적으로 1~2개가 대다수를 차지함.

출처: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편집 (보건복지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 (단위: %)

구 분	참여 경험		프로그램 수			계
	있음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학력보완교육	0.3	99.7	86.9	11.3	1.8	100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0.5	99.5	99	1	-	100
직업능력향상교육	0.6	99.4	74.1	13.8	12.1	100
인문교양교육	0.6	99.4	70.3	18.4	11.2	100
문화・체육・예술교육	1.5	98.5	72.1	18.3	9.6	100
시민참여교육	0.2	99.8	78.9	8.6	12.4	100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시행에도 확대되지 않음

- 현재 학력을 보유하지 못한 성인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진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수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법」 제3조 ②항에 따라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성인은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지 못함.

-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2월 성인 장애인 학습자의 학력취득을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을 발표함. 기본교육과정은 저학력 성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음.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고시에는 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본 고시에는 지역의 특수성과 장애인의 교육실태뿐만 아니라, 장애성인의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지원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2025년에도 전국 4개소(서울 1개소, 대구 1개소, 경남 2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2. 관련 근거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23조

□ 20.12.30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

3. 요구안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실현 및 활성화

항목		초등과정(240시간) 1개반		중등과정(450시간) 1개반	
		산출근거	예산	산출근거	예산
강사비		240시간x35,000	8,400,000	450시간x35,000	15,750,000
교육 활동비	창의적 체험활동비	40시간 기준 1인 20,000x8회	1,600,000	60시간 기준 1인 20,000x12회	2,400,000
	수학여행	1인당 200,000	2,000,00	1인당 200,000	2,000,000
	재료비	1인당 50,000	350,000	1인 50,000	350,000
	홍보비	리플렛 등	500,000	리플렛 등	500,000
급식비		40주x2일x7명x6,000원	3,360,000	40주x3일x7명x6,000원	5,040,000
전담인력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4급 3호봉)*0.5(2개반당 1명)	19,000,000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4급 3호봉)*0.5(2개반당 1명)	19,000,000
예산			33,410,000		45,040,000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문해교육센터 설립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문해교육센터 설립

Ⅲ.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300명 및 전담인력 60명 도입

1. 현황 및 필요성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지역사회에서 점검·확산하는 권리기반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거나 보호적 고용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여,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의 생산성·효율성 중심 노동시장 구조에서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노동의 기준을 생산량이나 경쟁력이 아닌 '권리 실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모델임.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1)최중증장애인우선고용의 원칙, (2)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의 3대직무 구성의 원칙, (3)권리생산노동의 원칙, (4)장애인권리협약(UNCRPD) 홍보 및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리 실현의 원칙, (5)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원칙을 가짐.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6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시흥시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65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인구가 약 4만6천명(장애인구 비율의 3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공공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7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300명**을 **전원 주 20시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함.

시도별	2024		
	총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전국	2,631,356	966,428	1,664,928
서울특별시	386,316	142,163	244,153
부산광역시	174,256	65,294	108,962
대구광역시	130,674	46,606	84,068
인천광역시	152,707	54,009	98,698
광주광역시	69,175	27,575	41,600
대전광역시	71,344	27,982	43,362
울산광역시	51,055	18,874	32,181
세종특별자치시	12,993	4,980	8,013
경기도	587,910	213,886	374,024
강원특별자치도	99,542	36,833	62,709
충청북도	96,694	37,102	59,592
충청남도	133,136	48,491	84,645
전북특별자치도	128,993	46,557	82,436
전라남도	134,551	48,431	86,120
경상북도	177,436	63,437	113,999
경상남도	187,756	69,714	118,042
제주특별자치도	36,818	14,494	22,324

-

- 주 20시간 기준은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산정,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최소 근로 기준으로, 최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권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진행할 때 전담인력은 필수 요소임. 그러나 전담인력은 과다한 업무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 당 전담인력 1명 배치**를 운영의 기본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민간 위탁·공모 방식이 아닌 광역 또는 지역 단위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담인력 운영, 직무 지원, 관련 서비스 연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 UN「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요구안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주20시간 300명 확대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60명 확대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의 연속적 · 안정적 일자리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불안정성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의 고용형태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중 ‘복지형’ 유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일자리 유형은 기본 1년을 기간으로 계약하며 연속적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2025년 경기도는 ‘반복적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지만,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환류하는 장치는 미비한 실정’에 따라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인지하고 평가지표 도입 및 연속 사업으로 위치하기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였음. 2년 주기 재공모로 진행되어 왔던 경기도는, 해당 연구 사업으로 개발된 평가지표를 26년 상반기에 확정 및 하반기 도입하여 현재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측정함으로써 공모제를 폐지할 예정임.

- 전북 역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3년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2026년까지로 3년 위탁이 도래하여 다시 한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고용의 위태로워지고, 수행기관은 전문적 실력을 획득하기보다 단순한 공모 사업의 재참여를 위해 소모적 행정을 준비하여야 함. 이는 결국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복지 사업으로 치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함.

- 이에 전북도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연내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 및 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주기적인 공모 방식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기관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위탁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자리잡을 경우,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몇 없는 양질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문제를 동반함.

- 위탁기관의 불안정한 사업운영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직결되며, 위탁기관이 차기년도 사업공모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채용된 노동자의 고용 또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임. 이에 위탁기관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며 회계상 부정이나 사업 취지에 반하는 집행을 하는 등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가지표를 통해 기존 위탁기관의 지속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지원체계가 담보될 수 있음. 지역사회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기관의 안정성이 도모되어야만 중증장애인 참여자의 안정적인 참여와 전문성 있는 지원체계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전북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평가지표 도입을 통한 사업 지속화가 필요함.

2026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진행 현황

시도	참여자	노동자 근로시간	전담인력 배치기준	사업기간	수행 기관 선정	예산 매칭
경기도	850	주 20 주 16	10명당 1명	22개월	2년	도비 전액
강원도	59	주 15	10명당 1명	12개월	전체 3년	도비 50%, 기초 50%
전라북도	162	주 15	10명당 1명	12개월	매년: 부안, 정읍 3년: 고창, 군산, 익산, 전주	도비 20%, 기초 80%
전라남도	130	주 15	5명당 1명	12개월	매년: 광양, 무안 3년: 목포, 순천, 여수, 나주, 신안	도비 30%, 기초 70%
경상남도	130	주 15	5명당 1명	9개월	3년	도비 30%, 기초 70%
부산광역시	77	주 16	5명당 1명	10개월	매년	도비 50%, 기초 50%
인천광역시	74	주 15	10명당 1명	10개월	매년	시비 50%, 기초 50%
광주광역시	35	주 15	5명당 1명	10개월 및 12개월	매년	시비 전액
충청북도	50	주 15	10명당 1명	9개월	매년	도비 30%, 기초 70%
춘천시	40	주 15	10명당 1명	10개월	매년	시비 전액
제천시	20	주 14	10명당 1명	12개월	매년	시비 전액
시흥시	10	주 16	기관당 1명	9개월	매년	시비 전액
광주서구	20	주 14	5명당 1명	8개월	매년	구비 전액

- 나아가 전담인력에 대한 최저시급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관별로 매년 전담인력 교체가 이뤄지고 있음.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지원은 물론, 권리중심 직무의 개발 및 운영을 전담인력이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 개선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담인력에 대한 최저시급 외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전담인력의 지속적 이탈이 발생하고, 결국 사업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노동자들의 직무 양질화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전담인력이 본 사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며 직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사업의 양질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이에 전담인력에게 전북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전담인력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탈 없이 지속 참여할 수 있는 유도 장치가 되어야 함.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2024년 사업 도입 당시부터 전담인력에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고, 지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는 전담인력에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사업	전담인력 임금 기준	월 급여
광주광역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생활임금	2,780,327
전라남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생활임금 단계적 도입 (연간 6.3% 인상, 3년 후 도달)	2,292,763
*서울특별시	특화형 일자리	생활임금	2,533,289
전북특별자치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저시급	2,156,880

- 이러한 제반 여건의 개선을 통해 사업 양질화를 유도하고, 이로써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노동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관련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 UN「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요구안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 및 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3년 공모제 폐지 및 평가지표제 도입, 연속 사업 시행

□ 기관 및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생활임금 도입

Ⅴ.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민주주의!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강화>-도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판정 도구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의료·재활 모델에 치우쳐 있어 실제 장애인의 삶 및 지원 필요성과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현장과 학계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선 TF를 운영 중임.

○ 의학적 기준에 치우친 판정도구의 조사 항목별 점수 문항,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기준의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X1영역 360점 이상은 사실상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2025년 3월 기준 X1영역 점수가 3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 최중증장애인은 15,591명에 달하며, 동일한 기준에 해당하며, 동일한 수준에 해당하는 최중증장애아동까지 포함 시 21,281명에 달함.

[표] 2025년 3월 기준, C계수 등급별 X1영역 합산점수 분포 현황

C 계수		0.0374	0.0415	0.0519	0.1038	0.1453	0.2075	0.2496	합계
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115~199점	200~254점	255~289점	290~359점	360~429점	**430~499점**	**500점 이상**	-
	인원	45,969	25,652	15,306	13,866	8,938	**6,617**	**396**	116,744
	아동	89~154점	155~197점	198~224점	225~279점	280~333점	**334점~387점**	**388점 이상**	-
	인원	17,207	10,788	5,412	6,860	3,103	**2,540**	**47**	45,957

※ 종합조사 결과 구간외(성인 530명, 아동 186명) 불포함

※ 출처 : 서미화 의원실 자료제공,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재구성

○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과 시설 수용이라는 대한민국 장애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선별적·잔여적 기제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며 활동지

원서비스의 보장성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음. 그 결과 전체 장애인의 35.3%가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약 82.1%가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임.(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이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지방정부는 낮은 보장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일상적 삶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책임이 있음.

○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추가지원제도에 있어 가족의 부양을 전제하는 잔여적 방식과 행정편의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며 엄격한 선별을 지속하고 있음. 의미 있는 추가지원시간을 위해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에서의 고득점과 와상·사지마비 진단, 주민등록등본상의 독거 또는 취약가구를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경직성으로부터 다변적 삶의 환경과 욕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실정.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X1점수 360점을 넘는 중증장애인의 인원이 668명이고, 이 중 독거 또는 취약 가구 장애인의 수가 330명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활동지원 및 200시간 이상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45명에 불과한 상황임.

판정 도구의 결함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포착되지 않은 채 낮은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서비스 공백이 고착되어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서비스지원종합조사 X1 점수 기준별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기준)

시·군·구	활동지원 수급자인원	X1 300점 이상		X1 360점 이상		X1 426점 이상	
		전체 인원	그 중 X3영역36점 이상인 인원	전체 인원	그 중 X3영역36점 이상인 인원	전체 인원	그 중 X3영역 36점 이상인 인원
고창군	149	16	7	11	4	4	4
군산시	919	160	61	89	38	40	19
김제시	479	47	28	26	16	15	8
남원시	268	51	20	31	14	11	5
무주군	119	14	4	9	3	5	3
부안군	197	35	23	27	18	15	11
순창군	132	18	10	10	6	3	0
완주군	485	64	30	41	20	18	10
익산시	1,120	168	76	89	41	38	17
임실군	131	22	9	15	8	9	3
장수군	127	19	9	11	5	5	2

정읍시	483	77	36	36	16	12	4
진안군	112	15	6	7	2	3	1
전주시	2,477	465	212	266	139	127	78
합계	7198명	1171명	531명	668명	330명	305명	165명

광역 지자체	24시간 지원사업 시행여부	24시간 추가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지원 시간 (월)	대상 인원 (명)	수급 인원 (명)
서울	○	ㅇ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	350	200	200
부산	○	ㅇ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360점 이상인자 중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체상태) 24시간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24시간 호흡기 대상자, 사지마비로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등) ▸X1영역중 일상생활동작(ADL) 조사항목 중 '음식물넘기기' 영역,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영역 모두 최고점인 자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단,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능력 보유 필요 -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가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단독가구로 확인 된 자"	450	30	27
대구	O	ㅇ 종합조사 1~4구간이며 기능제한(X1) 점수 446점 이상의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430	65	51
인천	○	ㅇ 서비스종합조사 X1 영역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독거(취약)가구로 와상장애인(최중중장애인 24시간 활동지	465 (예외시간23시	90	90

		원)	간추가)		
광주	○	ㅇ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이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477~868	25	25
대전	○	ㅇ 종합조사 점수 38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자립생활 불가한 장애인	240	23	23
울산	○	ㅇ 기능제한(X1) 점수 360점이상 성인 대상자 중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휘귀난치성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392	10	10
세종	x				
경기	○	"ㅇ 인정점수400점이상[기능제한(X1)(성인 360점),(아동280점)]+독거,취약가구+와상+호흡기착용(상시,수시) ㅇ 인정점수433점이상[기능제한(X1)(성인 413점),(아동336점)]+독거,취약가구+와상"	330	342	342
강원	○	ㅇ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독거가구,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 독거가구	360~400	63	50
충북	○	ㅇ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188	24	16
충남	x				
전북	○	ㅇ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	392	45	45
전남	○	ㅇ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	458	3,079	34
경북	○	ㅇ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 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499	20	18
경남	○	ㅇ 인정조사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이고, 종합조사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 360점 이상이며, 거주 요건이 독거·준독거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24시간 호흡기 착용 등	413	27	27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장애인			
제주	○	ㅇ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중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자립생활불가+위급상황시 타임도움불가+동거가족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360	9	9

○ 이처럼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낮은 활동지원 보장성은 중증장애인 자립을 직간접적으로 저해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운영 불안정을 심화시키기도 함. 실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중간주택(체험홈・자립주택 등)에서는 부족한 서비스 시간을 기관의 자부담이나 전담 코디네이터의 투입으로 보충하고 있음. 이는 곧 낮은 서비스 보장성이 서비스 기관의 재정과 인력 부담의 과중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중간주택 운영 기관의 활동지원 자부담 지원 여부

단위: 개(%)

항목	빈도	퍼센트
지원함	21	48.84%
지원하지 않음	22	51.16%
합계(n=43)	43	100%

[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중간주택 운영 기관의 활동지원 시간 부족 시 인력 배치(중복응답)

단위: 개(케이스%)

항목	빈도	케이스퍼센트
담당 코디네이터	30	69.8%
코디네이터 외 센터 활동가(직원)	18	41.9%
자원봉사자	3	7.0%
해당없음	7	16.3%
기타	4	9.3%
합계(n=43)	62	144.3%

※ 출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25년 중간주택 및 주거서비스 운영 현황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별 서비스로,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활동지원과 같은 개인별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부터 일상적 삶에 대한 통제권과 주체적 삶의 보장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제도의 협소한 기준과 부족한 시간 등의 문제의 개선이 시급.

2. 관련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5호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제1차,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3. 요구안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추가지원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및 지원 시간 확대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300점** 이상으로 완화
- 종합조사 X1점수 외 와상·사지마비·호흡기 착용 등의 중복 조건 삭제
- 주민등록등본상 독거 여부 외, 가족구성원의 실질적 지원 여부에 따라 판단

□ 만65세 이후 탈시설한 비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200시간 보장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 및 기준 하향과 지원 시간 확대

- 독거 발달장애인 월 240시간 추가 지원
- 단기체험홈 입주 장애인 월 최대 600시간 지원(필요시 일 24시간 지원)
- 자립생활주택 등 중간주택 입주 장애인 월 200시간 추가 지원
- (가구환경 기준 완화) 행정상 비독거·비취약 가구여도 가족 구성원이 실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독거·취약가구’에 준하는 지원 시간 제공

[기초 지자체]

2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및 옹호 장치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종합조사 절차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장애계의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는 단순히 제도의 무늬 교체를 넘어, 의학적이고 일률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기준으로 서비스 필요도를 재단하는 공급자중심주의를 철폐하고 당사자중심으로의 대대적 재편과 개혁을 전제로 함.

○ 하지만 현행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종전 장애등급제가 유지되던 당시의 판정체계(인정조사)보다 더욱 엄격하게 기능적 손상을 측정하고, 장애등급이 신체에 등급을 매기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기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며 점수를 수치화하고 있음. 여전히 중증장애인은 높은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 자신의 ‘기능적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

○ 또한 현행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경우 의학적 진단에 관한 서류 및 신체 구조와 기능적 평가를 중심으로 단시간 진행되는 방문 조사 외 당사자가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 필요도를 사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이의신청 절차 또한 구조적으로 구제기관과 서비스 판정 결과를 내린 기관이 관할 행정청의 심사위원회로 동일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실제 신뢰성이 낮아 신청 자체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구간 상승의 경우도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2025년 5월, 수백명의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가들이 공급자중심주의적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갖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위탁사업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본부에 항의. 이후 동시다발적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손상과 무능의 증명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방문조사 방식을 탈피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 중개기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절차 조력을 통해 종합조사에 참여.

○ 그 결과 변경신청을 진행한 총 253명 중 163명의 서비스 구간이 상향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조사 영역인 기능제한(X1) 영역의 점수 상향 인원은 212명(약 84%)에 달했고, 서비스 시간은 최대 6등급(180시간)이 상향되었음. 이는 당사자의 자기 진술과 주도적 사정권이 배제된 채, 공단 조사원의 일방적 관찰로 진행되는 현행 종합조사가 얼마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 이에 전주시는 공단의 방문

조사 절차와 지자체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내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옹호자(절차 조력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제도의 미비성을 보완해야 할 것임.

2. 관련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5호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제1차,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3. 요구안

□ **당사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신규,변경,갱신 등), 시·군·구 차원에서의 절차 조력인 배석 안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 중개기관 등)**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선**
- 대면 심의 원칙 확립
-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의 참여 필수화
- 당사자 희망 시, 당사자 및 옹호 집단의 심의 절차 참여 보장(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일체를 당사자에게 공개)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통지 시 종합조사 항목별 세부 점수 공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등장한 장애인 이동권 운동,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문제 해결 운동,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운동, 장애인 교육권 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은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2010년 「장애인연금법」,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정」 등 국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의 가장 큰 동력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력이었음.

○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나타난 전 세계 각국의 장애의 사회모델 및 장애인운동, 1970년대 미국에서의 소비자 주권, 자기옹호, 포괄성 및 통합성을 주요 원칙으로 하며 등장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조직이자 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2000년대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의 시점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보다 섬세하고 구체화된 형태의 당사자 옹호·지원체계로 강조되고 있음.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해설을 제공하는 일반논평 5호(2017)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당사국이 자립생활센터, 탈시설 장애인 단체, 자기 옹호 모임, 동료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문.

○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53조)를 규정하고 2015년에는 IL센터의 역할과 지원 근거(제54조)를 명문화하였음. 또한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탈시설 지원을 위한 중요한 민간 인프라로 공인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연차별 개소수 확대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IL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하며, 정은경 장관은 후보자 시절 'IL센터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대통령 공약과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긴 연차별 개소수 확대 목표('22년 90개소)의 달성이 요원한 상황임. 2026년 1월 현재 기준, 전국 약 300여개의 자립생활센터 중 75개소(약 25%)만이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이 외에는 지방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이 상이한 상태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4개소, 지방비 지원 3개소).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난 21년 간 예산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 대다수 센터는 예산 내에서 본연의 당사자의 자립생활 권리 옹호·지원체계

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인력의 기본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편성이 어려워 독립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1]. 물론 2026년의 경우 시범사업 시행 21년 만에 자립생활센터 필수 인력이 4인에서 5인으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자립생활센터의 개소당 운영비 또한 168,468천원에서 211,040천원으로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지난 20년간 연 평균 0.6%의 상승률로 인건비 및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고착화된 문제의 해소와 독립적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한 조건임.

<표>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사업 지원 개소 및 개소당 보조금 예산액 현황

단위: 개소, 천원

지역	지원유형	개소 수	총 지원금액	국비 지원 (매칭액 포함)	지방비 지원 (광역지자체 기준)
서울	국비센터	8	302,791	211,033	91,758
	지방비센터	53	263,394	-	263,394
	계	61			
부산	국비센터	8	226,032	211,032	15,000
	지방비센터	10	189,000	-	189,000
	계	18			
인천	국비센터	5	(평균) 281,016천원 (최대) 292,513천원 (최소) 268,792천원	211,032	(평균) 69,984천원 (최대) 81,481천원 (최소) 57,760천원
	지방비센터	6	(평균) 230,524천원 (최대) 241,804천원 (최소) 221,012천원	-	(평균) 230,524천원 (최대) 241,804천원 (최소) 221,012천원
	계	11			
대구	국비센터	6	243,920	211,033	32,887
	지방비센터	1	205,152	-	205,152
	계	7			
대전	국비센터	3	168,467	211,032	-
	지방비센터	4	100,000	-	100,000
	계	7			
광주	국비센터	4	168,467	211,032	-
	지방비센터	5	168,826	-	168,826
	계	9			
울산	국비센터	2	(최소) 211,032 (최대) 238,192	211,032	(최소) 0 (최대) 27,160
	지방비센터	4	130,000	-	130,000
	계	6			
세종	국비센터	1	(확인 안 됨)	211,032	(확인 안 됨)
	지방비센터	1	39,040	-	39,040
	계	2			
경기	국비센터	6	247,500	211,032	36,468
	지방비센터	55	247,500	-	247,500
	계	61			

1) 이동석 외 (202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대구대학교장애학연구소 등.

지역	지원유형	개소 수	총 지원금액	국비 지원 (매칭액 포함)	지방비 지원 (광역지자체 기준)
충북	국비센터	5	251,032	211,032	40,000
	지방비센터	4	156,817	-	156,817
	계	9			
충남	국비센터	5	211,032	211,032	-
	지방비센터	2	233,028	-	233,028
	계	7			
전북	국비센터	4	250,000	211,032	38,968
	지방비센터	3	250,000	-	250,000
	계	7			
전남	국비센터	5	282,835	211,032	71,803
	지방비센터	7	282,835	-	282,835
	계	12			
경북	국비센터	2	211,032	211,032	-
	지방비센터	2	154,000	-	154,000
	계	4			
경남	국비센터	5	258,033	211,033	47,000
	지방비센터(도)	10	258,033	-	258,033
	지방비센터(시군)	4	20,000	-	20,000
	계	19			
강원	국비센터	4	211,032	211,032	-
	계	4			
제주	국비센터	2	211,033	211,032	(확인 안 됨)
	계	2			

○ 한편, 2023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하위 유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신설되어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의 공모 절차가 진행 중임.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권익옹호활동과 자립생활지원을 동시에 하는 동료 옹호 조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과 같이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자로 보는 곳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짐.

○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는 구분되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강화시켜야 하며, 그 역할과 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7년부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동료성에 기반한 당사자 지원 단체의 참여와 역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의 활성화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5호
□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3. 요구안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기본계획 수립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장애인 주거지의 시설화 방지,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및 보장, 일반 대중시설 및 서비스로의 접근성 증진)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주요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당 지원 확대

- 기본 인력 5명➔ 7명으로 인력 확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자립생활센터(기존) 지원단가를 인건비 기본 100%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대 기본사업(동료상담, 권익옹호, 탈시설,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별 최소 1개 이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 소수 장애 유형에 특화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센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Ⅳ. 장애인도 시민으로 탈시설하는 민주주의!

<탈시설 권리 실현>

1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1. 현황 및 필요성

○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비준국으로서 협약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주거 및 지원 서비스 정책과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함. 따라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임.

○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시설 수용을 돌봄의 방식이 아닌, 장애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로 규정함. 동 가이드라인은 △시설 수용 정책의 종결과 △ '예산과 자원의 할당' 을 탈시설의 핵심 요소로 강조함. 이를 위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기존 시설의 설립 및 개·보수에 대한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재할당해야 함을 제시함.

○ 정부 또한 2021년 8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2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이에 발맞춰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정책적 퇴행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후퇴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회복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5개년 계획을 강화해야 함. 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책임을 포함해야 할 것임. 또한,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

2. 관련 근거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3~’ 27)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5호
□ 유엔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3. 요구안

□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수립
- 전체 사회복지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기능보강 투자 금지
- 신규입소 금지 및 입소대기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시범사업

□ 계획 수립 및 평가 전과정 탈시설당사자 참여

2 장애인 주택 확보 및 주거생활서비스 제도화

1. 현황 및 필요성

○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해 왔음. 그 결과, 현재 2만 8천여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2025년 3월, 시설입소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립지원법)**」이 제정됨. 본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과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8개 광역 및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이며, 2025년 10월기준, 총 457명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음.

○ 향후 모든 지자체는 불필요한 시설 입소와 재시설화를 예방하고, 탈시설 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연착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주택 확보 와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등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함.

2. 관련 근거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3. 요구안

□ LH·지역주택도시공사·지자체 협의 통해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 장애인 시설입소 및 재시설화 예방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자체 매입, LH, 지역주택도시공사 물량 활용)

(*주거생활서비스란 주택계약 및 주택관리, 일상생활, 금전관리, 낮 활동·직업 등의 사회참여, 건강·의료 지원, 위기대응 지원, 의사결정 지원 등 생활 전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함.)

3 탈시설 및 자립생활 장애인 지원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시설입소장애인의 경우 평균 18.9년이라는 장기간의 시설 생활로 인해 탈시설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며, 재가장애인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거, 경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 전반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 지원 제도 강화가 필수적임.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기존 시설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 발표하며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을 지속 중임.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2022년 9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인 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79번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통해 장애인 자립, 돌봄, 건강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를 선언함.

○ 특히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주거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지원 ▲일자리·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지원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탈시설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강화가 요구됨.

2. 관련 근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 정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정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 요구안

□ 탈시설 및 자립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확대
□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대상 탈시설 및 자립 지원
□ 탈시설 및 자립장애인 기초지자체 사례관리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한 탈시설 및 자립장애인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체계 구축
□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4 시설입소장애인·입소대기장애인 지역사회 연계 사업 시행

1. 현황 및 필요성

○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시설에 머물거나 가족이 입소를 의뢰하는 배경에는 정보 취득의 한계가 주요하게 작용함.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 희망자의 31.6%가 시설로부터 자립 욕구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상당수가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몰라 자립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음.

○ 재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음.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거, 일상생활, 낮 활동 지원 등 필수 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한 채 방치될 위험이 높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소 대기 명부는 중복 대기자 파악이나 당사자의 현재 상태, 긴급 지원 필요성 등을 관리하지 않아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그 결과, 결국 가족 돌봄의 한계가 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함.

○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시설입소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복지관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변화한 정책 정보와 자립 경험을 공유하는 연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이와 같은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시설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 지원, 재가 장애인의 무분별한 시설 입소 예방, 가족이 안심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2. 관련 근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정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 요구안

□ 시설입소장애인, 입소대기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사회 연계 사업 실시
- 지자체 주도 하에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 1:1 매칭 실시
-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별 연 사업비 2,000만 원 편성

5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학대피해생존자 자립지원 체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2019-2024)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행정처분은 총 289건에 달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폭력, 금전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개선명령'이 23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시설폐쇄는 24건에 불과함. 특히 특정 시설에 수년간 동일·유사한 침해가 반복되고, 학대와 방임으로 사망사건까지 발생했음에도 시설 운영이 유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지자체의 **'봐주기식 행정'**과 **'솜방망이 처분'**이 문제로 제기됨. 이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은 학대 예방 효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적어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타협없는 행정을 실현해야 함.

○ 한편, 현행 학대 대응 체계에서 학대피해생존자의 권리 회복과 이후 삶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 또한 전면 개선이 필요함. 학대피해장애인이 주거·돌봄·의료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작동되지 않아 타시설로 전원되거나, 심지어는 학대시설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따라서 학대피해생존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학대피해생존자 자립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2.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3. 요구안

□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학대피해생존자 자립지원 체계 구축

- 학대피해 발생 시 쉼터 외 단기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연계
- 주거, 활동지원, 일자리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6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지원 사업 실시

1. 현황 및 필요성

○ 20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가구의 주택가격은 연소득의 약 7.2배나 되어, 일반 가구(6.3배)보다 주택 구매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매달 지출하는 임대료도 일반 가구보다 부담이 더 크며, 장애인 가구의 66.1%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2019년 장애인 가구 주거실태 조사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비율이 3.9%, 장애인가구는 4.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 10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비율은 전체 가구가 45.5%인 반면, 장애인 가구는 7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장애인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근로를 통한 고정 수입 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은 월세에 대한 고정지출 부담이 큰 집단이기도 함.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세로 인해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전월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에 대해서도 전월세 지원사업 마련이 필요함.

2. 관련 근거

□ 「주거기본법」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정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 요구안

□ 장애인 전·월세 지원사업 시행

-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설: 수도권 2억, 지방 1억*20가구
- 장애인 월세 지원사업 신설: 200명*월 20만 원*24개월

7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홈리스·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혁신 주거 모델임.

○ 현재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 비중 또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사회적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복합적 지원이나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Aging In Place)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현 정부 또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 78번으로 선정함.

○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후, 2018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경기도는 암투병 중인 발달장애인 남매의 어머니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2023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2024년부터 지원주택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 이처럼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주거와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주택 조례 제정이 요구됨.

2. 관련 근거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3. 요구안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Ⅵ.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도시

<장애인가족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1. 현황 및 필요성

○ 시대적 과제: “가족의 지지기반을 통한 장애인 자립실현”

① 가족의 지지기반을 통한 장애인 자립 실현

장애인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재활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장애인을 지탱하는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생태체계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 복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현재 많은 장애인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희생하며 장기간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족 해체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투자입니다.

② 인권 기반 행정의 실현

장애인 가족 지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실현하는 공공의 책무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 책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가족을 보호함으로써 ‘불쌍해서 돕는 복지’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인권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③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저출생·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 장애인 돌봄은 이미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과거 대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해체되었으며, 현재 많은 장애인 가족이 ‘독박 돌

봄’ 구조 속에서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할 공공의 책임입니다.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러한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 전북의 현실: 높은 수요와 취약한 지원 인프라

① 높은 장애인 비율

2024년 기준 전북의 등록 장애인은 128,99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② 농어촌·고령화의 이중 부담

전북은 농어촌 지역 비중이 높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돌봄 인력 부족, 서비스 접근성 제한, 가족 돌봄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③ 심각한 심리적 위기 상황

조사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의 35%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험이 있으며 67%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가족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정책 공백: 14년간 멈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정책

① 광역센터 부재 지역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전북과 강원 두 곳뿐입니다. 다른 지역이 광역 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하는 동안 전북은 장기간 정책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② 지역 간 복지 격차

현재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주·군산·익산 3개 시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군 장애인 가족들은 실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입니다.

③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광역 단위 정책 조정 기능이 없어 사업 중복, 예산 비효율, 고위험 위기 사례 대응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요구안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실태조사, 정책 연구 및 제안,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서비스 자원 조정 등을 총괄 수행하도록 합니다.

□ 11개 시·군 '찾아가는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 센터가 없는 지역 장애인 가족을 위해 전문가 방문 지원 체계(찾아가는 복지 기동단)를 운영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합니다.

□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광역센터 중심으로 기초센터 네트워크 통합, 고위험 위기 가정 대응 체계 구축 의료·법률·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전북형 장애인 가족 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합니다.

2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조례 제정 및 보험가입

1. 현황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연대 복지 정책입니다.

○ 조례 제정 필요성

①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사고 발생 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험 지원 제도는 이러한 '독박 책임' 구조를 완화하고 가족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가 됩니다.

②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배상 책임에 대한 불안은 발달장애인의 외출과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보험 제도가 마련되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③ 민간 보험 가입 장벽 해소

많은 발달장애인이 보험사의 가입 제한이나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단체보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④ 높은 정책 체감도

배상책임보험은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보장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소액의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북의 지역적 특성 반영

① 농어촌 지역 안전망 강화

농어촌 지역은 사고 발생 시 대응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 차원의 보험 지원 제도는 지역 간 복지 격차 없이 모든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②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연계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본 사업을 관리할 경우

보험 상담,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법률 자문 및 사례 관리까지 연계하는 전북형 통합 지원 모델 구축이 가능합니다.

2. 요구안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조례 제정 및 보험가입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등록 발달장애인

-보험료 : 도비 및 시·군비 매칭을 통한 전액 지원 (자부담 없음)

-가입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등록 장애인 정보 기반 자동 가입

Ⅵ. 장애인도 시민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장애인건강권 보장>

1 지역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5개년 계획수립

1. 현황 및 필요성

○ 그동안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확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신설, 관련 예산 확대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기본 환경 조성이 추진되어 왔음. 중앙 차원에서는 국립재활원을,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와 사례관리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장애인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인력이 갖추어진 의료기관과 재활·구강 전문 의료기관을 확충함.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사업 등 수가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장애인의 의료이용 부담을 경감해 왔음.

○ 그러나 의료기관 선택부터 방문, 진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의료이용 장벽이 존재하여, 전체 인구의 미충족 의료율이 5.3%인 데 비해 장애인은 17.3%에 이르고 있음.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소규모·분산 지정과 기능 세분화로 인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이동수단 제약, 의사소통의 불편 등이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동의 어려움과 수검에 필요한 특수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202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보건복지포럼』 2023년 11월, 통권 제325호, pp.61~76)을 발간함. 해당 보고서는 장애인의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 및 의료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임.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예방 가능한 사망과 치료 가능한 사망으로 구분되는데, 2021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비장애인 28.3명, 장애인 175.7명으로 약 6.2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비장애인 49.0명, 장애인 118.4명으로 약 2.4배에 달함. 특히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예방 가능한 사망보다 치료 가능한 원인에 의한 사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이 의료시스템 내에서 구조적인 차별과 접근성 한계를 더 크게 겪고 있음을 시사함.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건강·재활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쉬운 의료서비스 이용, 재활을 통한 삶의 회복, 일상적 건강 수준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4대 전략, 12개 중점 과제, 31개 세부 과제를 수립함.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의료체계로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30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3개소, 권역재활병원 7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관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취약지에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중증장애인 10만 명당 장애친화 의료기관 수는 0개인 지역(세종)부터 41개에 이르는 지역(제주)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5개년) 수립이 필수적임.

○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 실태와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표를 설정하며, 연도별 이행 로드맵을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 수준을 제고하고, 미충족 의료율과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함.

[표1]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주치의 의료기관 비교표

시/도	장애인 수	중증장애인 수	장애인주치의 의료기관 수 (개)	의료기관 수	장애인주치의 의료기관 /중증장애인 수 (10만명 당)	장애인주치의 의료기관 /전체 의료기관 수
기준 연도	2024	2024	2025.11.30.	2025.3.4		
서울특별시	386,316	142,163	258	25,354	181.48	1.02
부산광역시	174,256	65,294	108	7,336	165.41	1.47
대구광역시	130,674	46,606	57	5,631	122.30	1.01
인천광역시	152,707	54,009	68	5,191	125.90	1.31
광주광역시	69,175	27,575	54	3,061	195.83	1.76
대전광역시	71,344	27,982	36	3,162	128.65	1.14
울산광역시	51,055	18,874	16	1,882	84.77	0.85
세종특별자치시	12,993	4,980	11	620	220.88	1.77
경기도	587,910	213,886	339	23,912	158.50	1.42
강원특별자치도	99,542	36,833	26	2,688	70.59	0.97
충청북도	96,694	37,102	39	2,940	105.12	1.33
충청남도	133,136	48,491	41	3,883	84.55	1.06
전북특별자치도	128,993	46,557	37	3,936	79.47	0.94
전라남도	134,551	48,431	37	3,481	76.40	1.06
경상북도	177,436	63,437	37	4,544	58.33	0.81
경상남도	187,756	69,714	57	5,666	81.76	1.01
제주특별자치도	36,818	14,494	15	1,377	103.49	1.09
합계 / 평균	2,631,356	966,428	1236	104,664	127.89	1.18

[표2]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친화의료기관 비교표

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수 (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 (개)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수(개)	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수(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건립 및 지정 수(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수	장애친화 의료기관 합계	장애친화 의료기관 / 중증장애인 수 (10만명 당)	장애친화 의료기관 / 의료기관 수 (%)
기준 연도	2025.11.30.	2025	2024.12.	2024.5.	2025.2.	2025.2.				
서울	2	2	3	0	1	1	3	12	8.44	0.05
부산	4	1	1	0	1	0	1	8	12.25	0.11
대구	1	1	0	0	1	0	0	3	6.44	0.05
인천	1	1	0	0	1	0	1	4	7.41	0.08
광주	0	1	1	2	1	0	0	5	18.13	0.16
대전	1	1	0	1	0	0	0	3	10.72	0.09
울산	0	0	1	0	0	0	0	1	5.30	0.05
세종	0	0	0	0	0	0	0	0	0.00	0.00
경기	2	2	1	0	1	1	1	8	3.74	0.03
강원	0	1	0	0	1	2	2	6	16.29	0.22
충청북도	1	1	1	4	0	1	1	9	24.26	0.31
충청남도	1	1	0	0	1	1	0	4	8.25	0.10
전라북도	0	1	1	2	1	1	1	7	15.04	0.18
전라남도	1	1	0	4	0	2	0	8	16.52	0.23
경상북도	2	1	1	0	0	2	0	6	9.46	0.13
경상남도	4	1	0	1	0	1	1	8	11.48	0.14
제주	2	1	0	0	1	1	1	6	41.40	0.44
합계 / 평균	22	17	10	14	10	13	12	98	10.14	0.09

2. 관련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3. 요구안

□ 지역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5개년 수립

□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 실태와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표를 설정하며, 연도별 이행 로드맵 수립

□ 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 평가·점검 체계 구축

2 중진료권당 장애친화병원 설치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 확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신설, 관련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기본적 제도 환경을 조성해 왔음. 중앙 차원의 국립재활원, 시·도 단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와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등 수가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해 왔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의료체계로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30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3개소, 권역재활병원 7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애친화 의료기관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장애친화 의료체계는 건강검진, 산부인과, 재활, 구강, 발달장애 등 기능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있어, 중증·복합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탐색과 이용 과정에서 높은 진입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각기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는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2016년 11월 발간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연구」에 따르면, 시·군·구별 장애인 인구 규모와 의료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 252개 시·군·구를 41개의 '장애인 중의료권'으로 분류한 바 있음. 이는 지역별 장애인 의료수요가 이미 권역 단위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임.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그러나 해당 체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핵심 의료 거점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기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 기존의 세분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발전시키는 새로운 개념으로 '장애친화병원'을 도입함. 장애친화병원은 장애인 관련 의료사업을 3개 이상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담창구 설치,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우선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됨.

○ 또한 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등 전문 인력 배치와 장애인 친화적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일상적인 의료부터 전문 진료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은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과 실행 역량에 달려 있음.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재정·행정적 책임이 필수적임.

○ 특히 장애친화병원은 중진료권 또는 장애인 중의료권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해야 함.

[표] 장애인 중의료권과 중진료권 수 비교

광역시도	의료권 수	중진료권 수	광역시도	의료권 수	중진료권 수
서울특별시	4	4	강원도	4	6
부산광역시	2	3	충청북도	2	3
대구광역시	2	2	충청남도	3	5
인천광역시	2	4	전라북도	3	5
광주광역시	1	2	전라남도	3	6
대전광역시	1	2	경상북도	4	6
울산광역시	1	2	경상남도	3	5
세종특별자치시	1	1	제주특별자치도	1	2
경기도	4	12	총	40	70

2. 관련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3. 요구안

□ **중진료권 또는 장애인 중의료권 단위별 장애친화병원 최소 1개소 지정·육성**

- 기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발전시키는 지역 거점 장애친화병원 설치
- 지역책임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 **장애친화병원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 책임 명문화 및 예산 확보**

-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필수 기능 보장
- 코디네이터·수어통역사 등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방비 반영
- 이동지원, 방문·연계 진료 등 접근성 강화 대책 병행 추진

3 지자체 전 의료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된 시설에만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다수의 기존 의료기관은 실질적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의료기관 중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2018년 기준 전체의 약 6.3%에 불과한 상황임. 202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중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건물 수는 2018년 4,005개소에서 2023년 3,220개소로 오히려 감소함. 이는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적 개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빅데이터개방포털에 따르면, 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대비 2023년 기준 의원은 31,718개소에서 35,717개소로, 치과의원은 17,668개소에서 19,032개소로, 한의원은 14,295개소에서 14,592개소로 증가함. 즉, 의료기관 수는 늘어나고 편의시설 설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왔음에도, 실제 편의시설 의무 대상 기관 수는 감소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의료기관 선택 단계에서부터 물리적 접근이 차단되거나, 진입·이동·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의료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미충족 의료와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 공공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편의시설 정책은 ‘신축 중심·소극적 적용’에 머물러 있음. 기존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면적인 실태 파악 없이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불가능함.

○ 특히 의료기관 편의시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장애인의 의료이용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수적임.

2. 관련 근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요구사항

□ **지자체 관할 전 의료기관 대상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등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수조사 실시

· 신축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접근성 조사

□ **기존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확대**

·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치비 지원 및 기술 컨설팅 제공

□ **편의시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편의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 구축

· 위반 시 개선명령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 **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접근성 평가 체계 도입**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 및 평가 체계 마련

· 조사 결과와 개선 현황의 공개를 통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4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24년 7월 31일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장애인은 총 5,69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0.2%에 불과함. 참여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제한적이며, 주치의 수 또한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수 대비 주치의 공급이 구조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줌.

1) 부족한 참여 주치의 수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참여 장애인	908명	1680명	2532명	3802명	5692명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참여 주치의	464명	549명	660명	675명	765명

2)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미비

○ 2021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가 진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 운동’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483개 참여 의료기관 중 89개소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문의한 결과, 62개소(약 70%)가 상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다수의 등록 의료기관이 장애인의 실제 내원과 이용을 전제로 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줌.

○ 등록 의료기관 상당수는 승강기·자동문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방문진료 서비스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제도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좌절되고 있음.

○ 대구지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을 맞아 장애인들이 직접 겪은 차별 사례 26건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병원 중 다수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 참여 병원 표식 부재 등으로 청각장애인의 의료이용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등 대표적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이 절반 수준에 불과함이 확인됨. 그럼에도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점검은 자가보고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높은 자기부담금, 방문진료 미활성화 등 유인요인 부재

-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대상 일반건강관리 기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6만 2950원, 중간점검료 3만 5410원, 교육상담료 최대 3만 6840원, 환자관리료 1만 470원, 방문진료료 최대 19만 2090원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자기부담금은 10%이지만,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이 일반의료비용에 추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유인요인이 부재.

- 또한, 지난 2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횟수를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확대함.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 의원급 참여기관 중 대부분은 단독개원(solo-practice)이고, 간호사 고용이 힘들기 때문에 방문진료 중심의 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 인력(대진, 방문간호사)이 필요 “함을 밝히고 있음. 즉, 별도의 공적 지원 없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법령과 시범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필수적임.
○ 특히 참여 의료기관 확대, 편의시설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방문진료 인프라 구축 등은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권한 없이는 실현될 수 없음.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조례 다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정의하고 사업 근거를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함.
○ 제주도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 명시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 및 예산 지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홍보 및 교육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조건을 제도화한 사례임.

○ 장애인 건강권 조례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지방자치단체 – 시 · 도

연변	지역	이름
1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3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6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9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0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1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12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3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14	전라남도	-
15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6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구

연변	지역		이름
1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12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3) 분석 결과

○ 대부분의 조례는 장애인주치의를 정의하고,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선도적인 내용을 담아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제주도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제주도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와 별개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주치의조례에서 명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명시 ”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등록 중증장애인이 30명 이상인 병 · 의원에 대하여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를 두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인 경우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방문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 편의시설 설치 예산 지원

-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홍보 및 교육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다른 기관들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광주, 경기, 전북, 강원, 경남의 경우에는 조례에 △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 독려,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 방문 진료 지원 △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의 육성, △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를 명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간호사 혹은 의료인 중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관련 활동이나 관련 학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

2. 관련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요구사항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 근거 명문화

Ⅷ. 장애인도 지역에서 시민으로 함께 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조례 제정

1. 현황 및 필요성

○ 2026년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임. CRPD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규범임.

- 한국은 2007년 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비준하여 국가적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UN CRPD 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21일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비판하며 “지방정부 역시 협약 이행의 주체이자 의무보유자”라고 강조한 바 있음.

- CRPD 국내 이행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구조적 편차가 크고, 협약의 구체적 기준을 지방행정에 실효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가 CRPD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례와 기준이 미흡한 현황임.

- CRPD 국내 이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준거 미비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구조적 편차가 크고, 협약의 구체적 기준을 지방행정에 실효적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 이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 권리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책임 아래 제공되는 서비스(활동지원·주거서비스·이동·교육·노동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 및 정책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

○ 2026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자체 차워의 UN CRPD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조례·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기회임.

2. 관련 근거

□ 헌법 제 6조 1항(국제법의 지위)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인식개선)
□ UN CRPD 제4조(당사국의 의무)
□ UN CRPD 제8조(인식개선)
□ UN CRPD 제32조(국제협력)
□ UN CRPD 제33조(당사자 참여)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제회의 활성화 의무)

3. 요구안

□ UN CRPD 이행 조례 제정

- 주요 조례 내용

1) UN CRPD 이행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
 - UN CRPD 기본원칙
 - 모든 정책, 조례, 행정에서 UN CRPD 원칙과 기준 준수
 - UN CRPD 기반 장애인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 참여 보장
 - 장애인 권리 보장 및 권익 옹호 지원 강화

2) UN CRPD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참여 보장
 - UN CRPD 이행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
 - UN CRPD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 주권 행정” 실현

3) UN CRPD 인식개선 활동
 - UN CRPD 인식개선 교육: 법정장애인식개선교육 내 UN CRPD 관련 내용 추가 및 장애인식교육 내용의 협약 반영 여부 점검
 - UN CRPD 교육 강사단 워크숍: 인식개선 교육 강사단에 대한 워크숍 진행(UN CRPD 개괄, 심화내용 및 최신 동향 등)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 지난 25.10.26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4년 6개월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본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각종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와 체계 등을 명시한 법안임.

○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기존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은 담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을 법안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수십년간 박탈되어왔던 성인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지자체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지자체의 심의·전달체계는 모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과 정책들은 기존 시·도 및 시·군·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또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음.

○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제 5조),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제 22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제 18조, 제19조), 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제 23조)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을 교육청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답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개정 되어야 함.

2. 요구안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 **전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주요안**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명시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항 명시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명시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구축

- 전주시 장애인평생학습센터 신설

2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평생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명시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 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제31조 ⑤에 따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해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장애인평생교육 제도화에 따른 지원 강화의 필요

◦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법안에 따라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단순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리 보장과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의 의무를 갖게 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5조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학습지원인력, 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22조는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고, 해당 지자체 장 등이 계획 수립을 의뢰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해당 학습자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하는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19조 5항은 국가·지자체·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에서 정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은 21년에 발표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음.

2. 관련 근거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5조, 제 19조, 제 22조

☐ 21.6.30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3. 요구안

□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예산 지원 기준 마련

- 교육부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
- 이에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준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기준 마련 필요

○ 장애인평생교육 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급식·간식비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
- 급식 지원이 필요한 장시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기준 혹은 시·도교육청 해당연도의 급·간식비 지원 기준 등을 준용하되, 성인장애인학습자를 감안하여 지원

○ 중증장애성인 4명당 1명의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
- 발달(지적,자폐성), 심한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는 4명당 교육인력 1명 지원

■ 종사자 배치 기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table>
<tr><th>직 급</th><th colspan="2">역 할</th><th>인 원</th></tr>
<tr><td>시설의 장</td><td colspan="2">-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업무 총괄 관리</td><td>- 학습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td></tr>
<tr><td rowspan="3">교육·행정 인력</td><td rowspan="2">교육인력
(비상근포함)</td><td rowspan="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 및 운영
※ 상근 교사는 일 4시간 이상 프로그램 담당 및 운영을 해야 함</td><td>- 학습자 10명 당 1명
(상근·비상근 포함 기준)</td></tr>
<tr><td>- 발달(지적,자폐성), 심한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는 4명당 1명
(± 40% 가감 가능)</td></tr>
<tr><td colspan="3">※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 심한 뇌병변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td></tr>
</table>

<table>
<tr><td></td><td colspan="3">참여 프로그램 인원은 4명을 권장하되 이를 초과 할 경우, 1명의 보조인력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인력을 상근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담당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시간 동안에는 담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상담, 돌봄, 수업 준비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교육인력 인원 산출 시 소수점 발생 시 절하
예시1) 학습자 45명일 경우 : 4명
예시2)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심한 뇌병변, 심한 장애 두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7명
예시3) (+40%일 경우) 예시2와 동일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학습자 5.6명당 1명으로 총 5명
예시4) (-40%일 경우) 예시2와 동일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학습자 2.4명당 1명으로 총 12명</td></tr>
<tr><td></td><td>행정인력</td><td>-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업무
* 예·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이용자 등록 관리, 보조인력 관리 등</td><td>- 학습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td></tr>
<tr><td colspan="4">※ 학습자 산출 기준 시간(시설의 장, 행정인력 해당): 주당 학습자 수* X 주당 20시간
* 개별 프로그램 학습자 총수가 아님(인원 중복 산정 불허)
(예시) 학습자 30명일 경우, 학습자 산출기준은 30명 X 주 20시간= 주당 600시간
- 주당 600시간은 시설의 장, 행정인력 배치를 위한 학습자 산출 기준 시간으로, 학습자 30명이 주당 20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습자 10명은 주당 30시간, 학습자 20명은 주당 15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 600시간을 충족하게 되면, 시설의 장과 행정인력을 각각 1명씩 배치 가능함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의무 배치
※ 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경우 겸무 권고(교육인력 또는 행정인력)</td></tr>
</table>

○ 장애성인 학습자에게 안정적인 교육제공을 위하여 150평 이상의 교육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따른 교육공간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대상자의 특성상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 필요하며, 장애성인학생 30명 학생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교육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 150평 이상의 교육공간 마련 및 지원 필요

[기초 지자체]

2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및 옹호 장치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종합조사 절차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절차 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장애계의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는 단순히 제도의 무늬 교체를 넘어, 의학적이고 일률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기준으로 서비스 필요도를 재단하는 공급자중심주의를 철폐하고 당사자중심으로의 대대적 재편과 개혁을 전제로 함.

○ 하지만 현행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종전 장애등급제가 유지되던 당시의 판정체계(인정조사)보다 더욱 엄격하게 기능적 손상을 측정하고, 장애등급이 신체에 등급을 매기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기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며 점수를 수치화하고 있음. 여전히 중증장애인은 높은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 자신의 ‘기능적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

○ 또한 현행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경우 의학적 진단에 관한 서류 및 신체 구조와 기능적 평가를 중심으로 단시간 진행되는 방문 조사 외 당사자가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 필요도를 사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이의신청 절차 또한 구조적으로 구제기관과 서비스 판정 결과를 내린 기관이 관할 행정청의 심사위원회로 동일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실제 신뢰성이 낮아 신청 자체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구간 상승의 경우도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2025년 5월, 수백명의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가들이 공급자중심주의적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가 갖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위탁사업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본부에 항의. 이후 동시다발적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손상과 무능의 증명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방문조사 방식을 탈피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 중개기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절차 조력을 통해 종합조사에 참여.

○ 그 결과 변경신청을 진행한 총 253명 중 163명의 서비스 구간이 상향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조사 영역인 기능제한(X1) 영역의 점수 상향 인원은 212명(약 84%)에 달했고, 서비스 시간은 최대 6등급(180시간)이 상향되었음. 이는 당사자의 자기 진술과 주도적 사정권이 배제된 채, 공단 조사원의 일방적 관찰로 진행되는 현행 종합조사가 얼마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 이에 전주시는 공단의 방문조사 절차와 지자체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내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옹호자(절차 조력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제도의 미비성을 보완해야 할 것

임.

2. 관련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제5호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제1차,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3. 요구안

□ **당사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신규,변경,갱신 등), 시·군·구 차원에서의 절차 조력인 배석 안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 중개기관 등)**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선**
- 대면 심의 원칙 확립
-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의 참여 필수화
- 당사자 희망 시, 당사자 및 옹호 집단의 심의 절차 참여 보장(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일체를 당사자에게 공개)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통지 시 종합조사 항목별 세부 점수 공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후보자

〈소외없는 교육〉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 지난 25.10.26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4년 6개월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본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각종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와 체계 등을 명시한 법안임.

◦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기존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은 담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부터 「장애인평생교육법」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을 법안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수십년간 박탈되어왔던 성인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지자체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지자체의 심의·전달체계는 모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과 정책들은 기존 시·도 및 시·군·평생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또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음.

◦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제 5조),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제 22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제 18조, 제19조), 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제 23조)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을 교육청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 OO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답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개정 되어야 함.

2. 요구안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주요안**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확립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명시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사항 명시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명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TF 구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북지부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구축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신설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신설

2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평생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명시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 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제31조 ⑤에 따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해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이후 장애인평생교육 제도화에 따른 지원 강화의 필요

-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법안에 따라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단순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리 보장과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의 의무를 갖게 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5조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학습지원인력, 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22조는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고, 해당 지자체 장 등이 계획 수립을 의뢰할 경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해당 학습자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하는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19조 5항은 국가·지자체·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에서 정하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은 21년에 발표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음.

2. 관련 근거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5조, 제 19조, 제 22조

□ 21.6.30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3. 요구안

□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 교육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예산 지원 기준 마련

- 교육부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
- 이에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준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기준 마련 필요

○ 장애인평생교육 무상급식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급식·간식비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
- 급식 지원이 필요한 장시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기준 혹은 시·도교육청 해당연도의 급·간식비 지원 기준 등을 준용하되, 성인장애인학습자를 감안하여 지원

○ 중증장애성인 4명당 1명의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
- 발달(지적,자폐성), 심한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는 4명당 교육인력 1명 지원

■ 종사자 배치 기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table>
<tr><th>직 급</th><th colspan="2">역 할</th><th>인 원</th></tr>
<tr><td>시설의 장</td><td colspan="2">-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업무 총괄 관리</td><td>- 학습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td></tr>
<tr><td rowspan="3">교육·행정 인력</td><td rowspan="2">교육인력
(비상근포함)</td><td rowspan="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 및 운영
※ 상근 교사는 일 4시간 이상 프로그램 담당 및 운영을 해야 함</td><td>- 학습자 10명 당 1명
(상근·비상근 포함 기준)</td></tr>
<tr><td>- 발달(지적,자폐성), 심한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는 4명당 1명
(± 40% 가감 가능)</td></tr>
<tr><td colspan="3">※ 발달(지적, 자폐성)장애인, 심한 뇌병변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두 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td></tr>
</table>

<table>
<tr><td></td><td colspan="3">참여 프로그램 인원은 4명을 권장하되 이를 초과 할 경우, 1명의 보조인력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인력을 상근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담당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시간 동안에는 담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상담, 돌봄, 수업 준비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교육인력 인원 산출 시 소수점 발생 시 절하
예시1) 학습자 45명일 경우 : 4명
예시2)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심한 뇌병변, 심한 장애 두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7명
예시3) (+40%일 경우) 예시2와 동일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학습자 5.6명당 1명으로 총 5명
예시4) (-40%일 경우) 예시2와 동일 장애인 학습자 30명일 경우 : 학습자 2.4명당 1명으로 총 12명</td></tr>
<tr><td></td><td>행정인력</td><td>-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업무
* 예·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이용자 등록 관리, 보조인력 관리 등</td><td>- 학습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td></tr>
<tr><td colspan="4">※ 학습자 산출 기준 시간(시설의 장, 행정인력 해당): 주당 학습자 수* X 주당 20시간
* 개별 프로그램 학습자 총수가 아님(인원 중복 산정 불허)
(예시) 학습자 30명일 경우, 학습자 산출기준은 30명 X 주 20시간= 주당 600시간
- 주당 600시간은 시설의 장, 행정인력 배치를 위한 학습자 산출 기준 시간으로, 학습자 30명이 주당 20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습자 10명은 주당 30시간, 학습자 20명은 주당 15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 600시간을 충족하게 되면, 시설의 장과 행정인력을 각각 1명씩 배치 가능함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의무 배치
※ 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경우 겸무 권고(교육인력 또는 행정인력)</td></tr>
</table>

○ 장애성인 학습자에게 안정적인 교육제공을 위하여 150평 이상의 교육공간 마련 및 예산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의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따른 교육공간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대상자의 특성상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 필요하며, 장애성인학생 30명 학생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교육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 150평 이상의 교육공간 마련 및 지원 필요

3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의 기초학력 미달

-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5,189명(장애인의 93.5%)으로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 명이 중졸이하 학력(54.4%)이라는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전체 국민(25세~64세) 중 중졸이하 학력은 12%로 장애인은 전체국민에 비하여 4.5배 이상 높아 기초학력 미달이 매우 심각함.

장애인의 교육정도(2023 장애인실태조사)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무학	12.3	12	10.9	9.2	8.5
초등학교	33	29.4	27.5	28.4	26.8
중학교	18.4	16	16.8	18.1	16.3
고등학교	24.5	27.2	29.6	29.9	31
대학 이상	11.8	15.3	15.2	14.4	17.4
계	100	100	100	100	100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등록된 성인장애인의 최종학력 현황

구분	전체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모름/무응답
장애인평생교육시설	7,991	5,615	258	204	1,652	257	6	-
	100%	70.3%	3.2%	2.5%	20.7%	3.2%	0.1%	-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 ~ 1.6% 수준으로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매우 참가가 저조함.

- 장애인이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고, 참여프로그램수가 전체적으로 1~2개가 대다수를 차지함.

출처: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편집 (보건복지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 (단위: %)

구 분	참여 경험		프로그램 수			계
	있음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학력보완교육	0.3	99.7	86.9	11.3	1.8	100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0.5	99.5	99	1	-	100
직업능력향상교육	0.6	99.4	74.1	13.8	12.1	100
인문교양교육	0.6	99.4	70.3	18.4	11.2	100
문화 · 체육 · 예술교육	1.5	98.5	72.1	18.3	9.6	100
시민참여교육	0.2	99.8	78.9	8.6	12.4	100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시행에도 확대되지 않음

- 현재 학력을 보유하지 못한 성인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진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수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중증·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특수교육법」 제3조 ②항에 따라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성인은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지 못함.

-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2월 성인 장애인 학습자의 학력취득을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을 발표함. 기본교육과정은 저학력 성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음.

-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고시에는 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본 고시에는 지역의 특수성과 장애인의 교육실태뿐만 아니라, 장애성인의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지원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2025년에도 전국 4개소(서울 1개소, 대구 1개소, 경남 2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2. 관련 근거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23조

□ 20.12.30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

3. 요구안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실현 및 활성화

항목		초등과정(240시간) 1개반		중등과정(450시간) 1개반	
		산출근거	예산	산출근거	예산
강사비		240시간x35,000	8,400,000	450시간x35,000	15,750,000
교육활동비	창의적 체험활동비	40시간 기준 1인 20,000x8회	1,600,000	60시간 기준 1인 20,000x12회	2,400,000
	수학여행	1인당 200,000	2,000,00	1인당 200,000	2,000,000
	재료비	1인당 50,000	350,000	1인 50,000	350,000
	홍보비	리플렛 등	500,000	리플렛 등	500,000
급식비		40주x2일x7명x6,000원	3,360,000	40주x3일x7명x6,000원	5,040,000
전담인력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4급 3호봉)*0.5(2개반당 1명)	19,000,000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4급 3호봉)*0.5(2개반당 1명)	19,000,000
예산			33,410,000		45,040,000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문해교육센터 설립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 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문해교육센터 설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 후보 정책공약 협약서

○ 본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 13만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8개 과제 33개 정책공약협약을 체결한다.
○ 본 후보는 아래 주제에 관한 정책을 정식 공약과 시정 주요추진과제로 채택하며, 당선 후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예산수립에 관해 공동논의 및 합의해 나간다.

1. 차별없는 장애인의 이동·교육·노동·탈시설·자립생활·건강 권리 실현

2. 포괄적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3.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도시 조성

4. 장애인 인권존중 지역사회 조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 후보
○○○